

울산광역시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2022. 3. 25. 시행)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적용대상 (전·현직 동일 적용)		지급액(만원)	
	공직분야	민간분야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1급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 대학총장	· 대기업 회장	40	30(20*)
			이동시간수당 30	
특2급	· 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언론사 대표		30	20
			이동시간수당 20	
일반 1급	·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 소지자 5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 의원(의장 포함) · 대학교수, 판·검사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 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사 임직원	· 유명 예술인, 종교인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의사, 한의사 · 기업, 기관, 단체의 임원, 중역 · 컨설턴트 대표(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민간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25	12
			이동시간수당 12	
일반 2급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 강사 등 · 학교법인 직원 및 학교의 교직원 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직원	· 기업, 기관, 단체의 부장급 · 중소기업 임원, 일반 컨설턴트 ·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체육지도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15	8
			이동시간수당 8	
일반 3급		· 외국어, 전산 강사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한 자	10	5
			이동시간수당 5	
일반 4급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	4
			이동시간수당 4	
일반 5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6	3
			이동시간수당 3	

-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 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이동시간수당은 1일 1회 지급함(3-가 참조). 단,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직자 등” 이라 한다)는 제외하되 다목의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 표자와 그임직원에 한하여 지급 가능
4.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5.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 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강사수당은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상관없이 외부강 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의 적용기준에 따름
7. 강사수당 적용대상이 공직분야와 민간분야가 중복 되는 경우 “공직분야”를 우선 적용함. 또한, 외래 강사 소속기관의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기준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단, 우리시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내에 한함)
8.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수 기준 적용
9.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 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10. 민간연구기관은 5인 이상 석·박사학위 소지자가 재직하는 연구기관으로 한정함
11.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2.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완성된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분류에 따라 일반 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용대상	지급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1시간 15만원 · 초과 매시간 12만원

-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로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다. 야간교육 추가 지급

- 야간(18시 이후) 교육시 강사수당 추가 지급 : 지급액의 20% 범위 내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준	세부요건
대상자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공무원이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단,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급액
A4용지	·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 200자 원고지 3.5매를 A4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주)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료 지급비율

구분	기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면으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권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울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미지급
2권역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제주, 충남, 충북, 전북, 전남	지급

- 주) 1.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출강 시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를 준용
 2.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3.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 주)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를 의미하며,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참여 필요교육

강의시간	출강인원	지급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 주) 해당분야 최고 전문가 등 시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정	수강인원	할증률
1개 과정	100인 이상~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 주) 1. 할증률은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석)2에 의한 지급 시 적용 제외

마. 동일강사 1일 중복출장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원 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 (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 기준)】

지급주체	강의 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문		○
다른 경우	불문			○

4 여비보상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울산지역 외 외래강사
-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3조 적용
- 지급내역(일비 미지급)
 - 교통비 : 실비 지급 가능
 - 숙박비 : 숙소를 제공하거나 실비지급 가능
 - 식 비 : 식권을 발행하거나 실비지급 가능
- ※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강사수당 지급기준(1-가)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별표상의 등급(제1호, 제2호)을 적용함
단, 강사수당 지급기준(1-가) 민간분야의 특1~2급은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별표상의 제1호 등급, 일반1~5급은 제2호 등급을 적용함

5 적용시기

- 2022. 3. 25.부터 실시하는 강의에 적용한다.